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95
------	------

2013. 7. 4.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6월 14일

나. 제안자 : 이창섭 의원(찬성자 10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2013년 7월 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 요지

- 최근 보조금 유용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여론이 증가하는 바, 서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함.

Ⅲ . 주 요 내 용

-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안 제3조)
-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5조)
-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6조)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7조)
-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
-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함.(안 제9조)
-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하도록 함.(안 제 10조)

IV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가. 조례 제정의 타당성

- 동 제정안은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는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공사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로 인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시 시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음.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

시·도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08.10.30
	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 4.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09.3.2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8.17
경상남도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2011.10.13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2.4.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2.7.11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12.2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2.10.2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4.8

나. 분야별 세부검토

1)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제정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소규모 단위사업 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등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표지판 설치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2)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제정안은 표지판의 종류를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거나, 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는 보조사업자가 각각의 공사표지판이나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지원 시설의 경우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시설을 건립 완료시에 각각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도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적이고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으면서,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이 되도록 제도적 추진에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표지판의 설치장소(안 제8조)

- 각종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장소와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표지판

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시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표지판이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 설치될 수 있으므로, 표지판에 규격과 형식, 재질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음.

4) 표지판 설치비용(안 제9조)

- 제정안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표지판을 설치·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근거는 없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1)」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1)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10조)

- 제정안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하도록 하되, 해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지원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조금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별로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됨.

6) 시행규칙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

이 예상된다. 제정안 취지에 따라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사례를 보면, 표지판이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운영 표지판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아크릴판을 사용하고, 고정된 형태로는 액자처럼 재활용을 하는 등 보조금 표지판의 설치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들이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은 학교 내 시설이나, 실내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음.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